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(2019. 9. 25.)

2019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

북지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2019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126
----------	--------

2019. 9. 25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- 나. 제 출 일 : 2019. 9. 9.
- 다. 회 부 일 : 2019. 9. 10.

2. 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가. 세입예산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	증감률
일반회계	12,487,197	12,467,022	20,175	0.16%
세외수입	823,104	823,104	0	0.00%
조정교부금등	550,000	550,000	0	0.00%
보조금	11,114,093	11,093,918	20,175	0.18%

나. 세출예산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감	증감률
일반회계	21,233,976	21,104,722	129,254	0.61%
인건비	3,596,120	3,596,120	0	0.00%
물건비	1,817,911	1,813,861	4,050	0.22%
경상이전	13,185,334	13,154,976	30,358	0.23%
자본지출	1,286,200	1,194,612	91,588	7.67%
예비비및기타	1,348,411	1,345,153	3,258	0.24%

3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

○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21,233,976	21,104,722	129,254	0.61%
보건행정과	4,009,623	3,980,215	29,408	0.74%
위생과	219,847	219,847	0	0.00%
건강증진과	14,305,775	14,302,517	3,258	0.02%
의약과	2,698,731	2,602,143	96,588	3.71%

4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

가. 증·감액 및 신규사업

(단위:천원)

부서·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
보건행정과	1)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	709,530	691,064	18,466
	1)에이즈환자 등록관리	1,750	2,500	△750
	1)에이즈환자 진료비	164,594	150,186	14,408
	1)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	1,750	1,060	690
	1)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(격리)치료비	1,294	1,500	△206
	1)표본감시기관 홍보물 및 운영물품비	340	540	△200
	1)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	720	3,720	△3,000
의약과	1)서강보건지소 조성 공사(신규)	381,870	345,592	36,278
	1)보건의료장비 구입(신규)	105,310	50,000	55,310
	1)시설장비유지비	13,000	10,000	3,000
	1)리플렛 및 물리치료소모품 구입	2,000	0	2,000

나. 국비 및 시·도비 반환금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 · 편성목		예산액	기정액	비교 증감
건강증진과	반환금기타	1,186,508	1,183,250	3,258
	시·도비보조금반환금	855,867	852,609	3,258
	1)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이자액	1,341	0	1,341
	1)난임부부지원 집행잔액	219	0	219
	1)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집행잔액	67	0	67
	1)인력운영비(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)이자액	843	0	843
	1)영양플러스사업 이자액	403	0	403
	1)영양플러스사업 집행잔액	385	0	385

5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- 보건소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억6,702만2천원이고 2,017만5천원(0.16%)이 증액되어 총 124억8,719만7천원임.
-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472만2천원이고 1억2,925만4천원(0.61%)을 증액하여 총 212억3,397만6천원임.
-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1개 사업으로 증액사업 7개, 감액사업 4개로서 1억2,599만6천원 증액되었음.

나.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-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9억8,021만5천원이고 2,940만8천원(0.74%) 증액된 40억962만3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에이즈예방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의 국시비 및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로 증액 편성

하였고, 주요감염병표본감시 및 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(격리)치료비 등의 국시비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편성하였음.

-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3억251만7천원이고 325만8천원 (0.02%)증액된 143억577만5천원으로 편성내역은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, 난임부부지원 사업 등에서 이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·도비보조금 반환금 325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음.
-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6억214만3천원에 9,658만8천원 증액된(3.71%) 26억9,873만1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서강보건지소 조성 시설비 3,627만8천원,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5,531만원, 영상의학실 골밀도 고장 장비 유지비 300만원, 재활보건사업 홍보비 및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시·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.
-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·시비 매칭 사업 3건, 구 자체필요 사업 4건으로 국고 및 시·도비 보건소 기능강화 차원의 감염병 관리와 저소득·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.
- 매칭 사업의 경우 국·시비 확정내시액의 증감이 발생하여 변동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임.
- 다만, 구 자체 필요 사업인 서강 보건지소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는 이미 발주 계약한 사업의 설계변경 조건 즉, 계획 변경 및 물량 증가 등의 사유가 아님에도 개략공사비의 차이분을 구비로 추가편성한

다는 것은 예산 산정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아울러 검사 및 검진사업의 장비 유지는 급작스런 고장으로 유지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으나, 주민의 상시 건강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향후에는 본예산에 장비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하여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급 장비를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- 또한, 국·시비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조금 예산을 받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국·시비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 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「지방재정법」

제 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